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동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8
----------	------

발의년월일 : 2016년 4월 19일

발 의 자 : 유동균 의원(1명)

찬 성 자 : 최웅식, 장인홍, 조상호, 이윤희,
맹진영, 이명희, 김경자(양천),
송재형, 문상모, 우창윤, 김종욱,
신원철, 양준욱, 김용석(도봉),
최영수, 김광수(도봉), 유광상,
유 용, 한명희, 서영진, 김기대,
강성언, 전철수 의원(23명)

1. 제안이유

- 가. 재정비촉진지구내 기존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은 준치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음.
-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대한 변경 절차(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를 이행하고 있어 절차 이행에 따른 상당기간 소요와 형평성에 맞지 않음.

라.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의한 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을 따르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4호 및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준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준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재정비축진계획의 경미한 변경)</p> <p>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p>1. ~ 13. (생략)</p> <p><u>〈신 설〉</u></p> <p>1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p>	<p>제5조(재정비축진계획의 경미한 변경)</p> <p>① ----- -----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존치지역 중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p> <p>15. -----</p> <p>②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존치지역 중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p> <p>6. -----</p>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이 개정조례안은 절차적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비용 수반은 따로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유 동 균